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식품의약품안전처	보도참고자료	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
보도일시	배포 즉시	배포일자	2021. 8. 11.(수)
담당과장	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오영진 (☎043-719-2252)	담당자	김현정 사무관 (☎043-719-2255)

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**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**를 **간소화**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**정보 공개 범위**를 정한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을 **8월 11일 입법예고**합니다.

○ 이번 개정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이 개정·공포('21.7.27)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▲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▲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입니다.

○ **(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간소화)**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**유효기간(3년)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**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

- 그동안 유효기간이 **종료되기 전**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**재인증을 받았으나** 앞으로는 **연장신청**을 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**연장**할 수 있습니다.

<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>

✓ 어린이 기호식품 중 **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**에 대하여 **품질인증 기준***에 **적합한지 심사**를 거쳐 **품질인증**

* ① 안전기준: HACCP 제품 또는 우수수입업소 ② 식품첨가물 기준: 식용 타르색소 및 보존료 사용 금지 ③ 영양기준: 당류 무첨가(과·채주스에 한함) 및 영양성분(단백질, 식이섬유, 비타민, 무기질) 중 2가지 이상 충족

○ **(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)** 식품 중 당·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,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**적극적**으로 **공개**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.

-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에 **정보 공개 범위**를 ▲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▲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**명확히 규정**하였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> 법령·자료> 입법/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붙임> 1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주요 개정내용
2.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주요 개정내용

구분	현 재		개 정 안
품질인증 연장	유효기간 만료 시, 신규 절차에 따라 재인증	→	▶ **유효기간 만료 시,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** - 매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신청 -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인증서 재발급
정보공개	명확한 정보 공개 근거 규정 없음		▶ **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범위** 규정 -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 - 품질인증식품에 관한 정보 -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,

붙임 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개요

○ **(목적)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정하여, 안전**하고 **영양**을 **고루 갖춘** 어린이 기호식품의 **제조·가공·유통·판매**를 **권장**(법 제14조)

○ **(대상)** 어린이 기호식품(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)

	가공식품	조리식품
간식용	○ 과자류 중 과자(한과류 제외)/캔디류 ○ 빵류 ○ 초콜릿류 ○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/발효유류(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) ○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○ 음료류 중 과·채주스/과·채음료/탄산음료/유산균음료/혼합음료 ○ 빙과류 중 빙과/아이스크림류	○ 제과·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
식사 대용	○ 면류(용기면만 해당) ○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/햄버거/샌드위치	○ 햄버거, 피자

○ **인증 절차**

신청	→	심사	→	인증	→	사후관리
제조(수입)업체가 식약처에 신청		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사		기준 적합 시 인증서 발급		연1회 수거·검사 등

○ **(인증 기준)** 아래의 기준을 **모두 충족**하여야 함

① **안전 기준**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, 우수수입업소)

② **식품첨가물 사용 기준**(식용타르색소, 보존료, 기타 첨가물 사용금지)

③ 영양 기준

《 영양에 관한 기준 》

가. **당류를 첨가하지 아니한 식품**(음료류 중 **과·채주스**)

나. **영양 기준(1회 섭취참고량 또는 총 내용량)**

① 열량, 포화지방, 당류

영양소	간식용	식사대용
열 량	**250kcal 이하**	500Kcal 이하
포화지방	**4g 이하**	4g 이하
당 류	**17g 이하**	-
나 트 륨	-	600mg 이하

② 단백질, 식이섬유, 비타민, 무기질

: 단백질, 식이섬유, 비타민, 무기질 **중 2개 이상**이 다음의 **기준을 충족**

영양소		간식용	식사대용
단백질		**3g 이상**	5.5g 이상
식이섬유		**2.5g 이상**	5.0g 이상
비타민	**비타민A**	**105㎍RE 이상**	210㎍RE 이상
	비타민B_1	**0.18mg 이상**	0.36mg 이상
	비타민B_2	**0.21mg 이상**	0.42mg 이상
	비타민C	**15mg 이상**	30mg 이상
	비타민D	**1.5ug 이상**	3.0ug 이상
무기질	**칼슘**	**105mg 이상**	210mg 이상
	철분	**1.8mg 이상**	3.6mg 이상